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주택분양의 기회를 상실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초 해당 공공택지에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명단을 해당 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전산관리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4절에 제2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 우선공급) ① 제24조의2에 따라 사

전당첨자를 모집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사업주체(이하 “후속사업주체”라 한다)는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5조부터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당초 해당 공공택지에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하 “당첨취소자”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후속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당초 사전당첨된 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지 당첨취소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취소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첨취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당초 사전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제4조제6항에 따른 요건을 정한 경우 후속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당초 사전청약의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사전청약 취소를 통보받은 날의 전일까지 제4조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후속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시 세대 내 주택수가 사전청약 당첨 시 세대 내 주택수보다 많은 경우

④ 후속사업주체는 당첨취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당첨취소자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을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

2. 제3항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

3.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

⑤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당첨취소자는 당초 사업과 동일한 공급유형의 주택에 당첨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제24조의7제1항에 따른 후속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전산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의 우선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7 및 제5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조성한 공공택지 내에서 사전당첨자를 모집하였다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후속사업주체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공택지에 건설·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u> <u>첨자 우선공급) ① 제24조의2에</u> <u>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였으</u> <u>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u> <u>택을 건설·공급하기 어렵게 되</u> <u>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u> <u>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사업주</u> <u>체(이하 “후속사업주체”라 한</u> <u>다)는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u> <u>제35조부터 제47조에 따라 입주</u> <u>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당초 해</u> <u>당 공공택지에서 사전당첨자 선</u> <u>정이 취소된 사람(이하 “당첨취</u> <u>소자”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입</u> <u>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u> <u>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u> <u>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요건</u> <u>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② 후속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u> <u>라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u> <u>주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당초</u> <u>사전당첨된 주택과 동일하거나</u> <u>유사한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기</u> <u>를 희망하는지 당첨취소자의 의</u>

사를 확인하고,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취소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첨취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당초 사전청약의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제4조제6항에 따른 요건을 정한 경우 후속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당초 사전청약의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사전청약 취소를 통보받은 날의 전일까지 제4조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후속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세대 내 주택수가 사전청약 당첨 시 세대 내 주택수보다 많은 경우

④ 후속사업주체는 당첨취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제58조의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생략) <u><신 설></u>	<u>당첨취소자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을 제26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u> <u>1. 제2항에 따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u> <u>2. 제3항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u> <u>3.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u> <u>4.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u> <u>⑤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당첨취소자는 당초 사업과 동일한 공급유형의 주택에 당첨된 것으로 본다.</u> 제58조의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제24조의7제1항에 따른 후속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전산관리해야 한다.</u>
--	---